

서울특별시의회
제283회 임시회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(105)

제 안 설 명



2018. 9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재 형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김 재형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(이하 “청년주택”)의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‘250m 이내’에서 ‘350m 이내’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. 이는 지난 1월 16일에 ‘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’에서 “역세권 등”의 범위를 “철도역, 환승시설, 산업단지,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” 관련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.

이 개정안은 역세권 범위의 조정을 통한 청년주택의 공급 가능물량 확대하여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,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고 희망을 나누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